

---

# 2028학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안)

---

♣ 본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관계 법령 개정,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학사조직 개편,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각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아주대학교**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주요 변경 사항
학생부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형요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7학년도] (일괄) 학생부교과 100% → [2028학년도] (일괄) 학생부교과 90% + 출결 10%</li> </ul> </li> <li>◎ 지원자격 변경: 출신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만 지원 가능</li> <li>◎ 수능최저학력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계열: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6이내</li> <li>- 자연계열: 변동 없음(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5이내)</li> </ul> </li> </ul>
학생부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전형 구성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7학년도] 학생부종합(ACE전형), 학생부종합(첨단융합인재전형)</li> <li>→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ACE전형 면접형), 학생부종합(ACE전형 서류형)</li> <li>- 학생부종합(ACE전형 면접형): 1단계 서류평가 100%(4배수), 2단계 1단계 점수 70% + 면접 30%</li> <li>- 학생부종합(ACE전형 서류형): (일괄) 서류평가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li> </ul> </li> <li>◎ 학생부종합(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서류평가 100%(4배수), 2단계 1단계 점수 70% + 면접 30%</li> <li>- 진로권별 해당 지역 재학 및 거주 지원자격 적용,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li> </ul> </li> <li>◎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면접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7학년도] 1단계 서류평가 100%(3배수), 2단계 1단계 점수 70% + 면접 30%</li> <li>→ [2028학년도] (일괄) 서류평가 100%</li> </ul> </li> </ul>
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형요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7학년도] (일괄) 논술 80% + 학생부교과 20% → [2028학년도] (일괄) 논술 90% + 학생부교과 10%</li> </ul> </li> <li>◎ 시험시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7학년도] 120분 → [2028학년도] 90분</li> </ul> </li> </ul>
수능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수학능력시험 구성 변동에 따른 수능성적 반영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영역 환산방식: 백분위 기준 자체환산점수 활용 → 표준점수 활용</li> <li>-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변동</li> </ul> </li> </ul>
전체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부교과점수 계산방식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li> </ul> </li> <li>◎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른 감점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치사항 호수별 정량 감점 → 비율 감점</li> </ul> </li> </ul>

## 모집시기별 선발인원 및 전형유형, 방법

### [수시, 정시]

시기	유형	전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및 비율	
수시	재외국민 (정원외)	재외국민 (3년)	전체(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제외)	34	[일괄] 수강능력시험 100
			의학과	2	[1단계] 수강능력시험 100 (10배수) [2단계] 1단계성적 60 + 면접 40
			간호학과	2	
			약학과	2	
			소계	40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279	[일괄] 학생부교과 90 + 출결 10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ACE전형 면접형)		563	[1단계] 서류평가 100 (4배수) [2단계] 1단계성적 70 + 면접 30
		학생부종합(ACE전형 서류형)		201	[일괄] 서류평가 100
		학생부종합(고른기회1전형)		95	
		학생부종합(고른기회2전형)		57	
		학생부종합(지역의사선발전형)		7	[1단계] 서류평가 100 (4배수)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전형)		10	[2단계] 1단계성적 70 + 면접 30
	논술위주	논술(논술우수자전형)		224	[1단계] 서류평가 100 (3배수) [2단계] 1단계성적 70 + 면접 30 + 신체검사/체력검정/신원조회(P/F)
실기/실적 위주	실기/실적(체육우수자(축구)전형)		10	[일괄] 학생부교과 4 + 학생부 출결 1 + 실적 40 + 실기 30 + 면접 25	
수시 소계			1,469		
정시	나군	수능(일반전형1)		10	[일괄] 수능 95 + 면접 5
		수능(지역의사선발전형)		미충원 이월인원	[일괄] 수능 95 + 면접 5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의학과	1	[일괄] 수능 95 + 면접 5
			약학과, 자유전공학부	7	[일괄] 수능 100
		수능(일반전형2)		146	[일괄] 수능 100
		수능(특성화고졸업자전형)		1	
		수능(기회균형전형)		7	
	수능(국방IT우수인재2전형)		7	[1단계] 수능 100 (5배수) [2단계] 1단계성적 80 + 면접 20 + 신체검사/체력검정/신원조회(P/F)	
	다군	수능(일반전형3)		467	[일괄] 수능 100
		수능(일반전형4)(교차)		8	
		수능(농어촌학생전형)		51	
		수능(특성화고졸업자전형)		22	
		수능(기회균형전형)		21	
	정시 소계			748	
	총 합계(재외국민 제외)			2,217	

\* 학생부종합(국방IT우수인재1전형)은 수시 미충원 시 정시에 이월하여 선발함

\* 진료권별 학생부종합(지역의사선발전형)은 수시 미충원 시 정시모집 해당 진료권의 수능(지역의사선발전형)에 이월하여 선발함

\* 수시 및 정시모집 최종 등록 결과에 따라 추가모집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여부 및 세부 사항은 2028.02.21.(월) 오후 6시 이후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전형기간 자율화]

시기	유형	전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및 비율	
자율화	재외국민 (정원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전체(의학과, 약학과 제외)	적정인원	[일괄] 면접 100
			의학과, 약학과	적정인원	[1단계] 수강능력시험 100 (20명) [2단계] 1단계성적 60 + 면접 40
		북한이탈주민	전체(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제외)	적정인원	[일괄] 면접 100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적정인원	[일괄] 수강능력시험 40 + 면접 30 + 서류평가 30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		110	[일괄] 서류평가 100

\*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 운영 일정은 수시, 정시 모집 및 운영시기와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음

\* 합격, 등록 결과에 따라 추가모집을 시행할 수 있음

# 전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정원내]

계 별	단과대학	학과(부)	수시								정시나군			정시다군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수능			수능		
				고교 추천 전형	ACE전형 (면접형)	ACE전형 (서류형)	고른 기회 전형 1	고른 기회 전형 2			지역 의사 선발 전형	논술 우수자 전형	체육 우수자 (축구) 전형	일반 전형 1	일반 전형 2	지역 의사 선발 전형
자 연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15	30	12	6	5	0	11	0	0	0	0	0	32	0
		산업공학과	10	20	8	4	2	0	6	0	0	0	0	0	18	0
		화학공학과	5	12	4	1	1	0	5	0	0	0	0	0	7	0
		첨단신소재공학과	12	24	10	2	2	0	8	0	0	0	0	0	27	0
		응용화학과	5	12	5	1	1	0	0	0	0	0	0	0	8	0
		환경안전공학과	6	8	4	2	0	0	0	0	0	0	0	0	10	0
		건설시스템공학과	7	8	4	2	1	0	0	0	0	0	0	0	7	0
		교통시스템공학과	7	8	4	3	0	0	0	0	0	0	0	0	7	0
		건축학과	8	16	8	3	2	0	10	0	0	0	0	0	11	0
	융합시스템공학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첨단ICT 융합대학	전자공학과	22	30	12	11	5	0	35	0	0	0	0	0	31	0
		지능형반도체공학과	10	20	9	4	2	0	10	0	0	0	0	0	26	0
		미래모빌리티공학과	20	30	14	7	5	0	14	0	0	0	0	0	47	0
	소프트 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10	24	12	4	2	0	10	0	0	0	0	0	20	0
		사이버보안학과	5	12	5	2	0	0	0	0	0	0	0	0	7	0
		디지털미디어학과	12	21	10	5	2	0	8	0	0	0	0	0	18	0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4	8	4	1	0	0	12	0	0	0	0	0	5	0
		프런티어과학학부	13	32	13	6	5	0	10	0	0	0	0	0	30	0
	첨단바이오융합대학	14	32	13	5	4	0	10	0	0	0	0	0	0	27	0
다산학부 대학	자유전공학부(자연)	10	0	0	0	0	0	10	0	0	88	0	0	0	0	
미 리	경영대학	경영학과	12	20	10	5	2	0	16	0	0	0	0	0	23	0
		경영인텔리전스학과	9	15	0	1	0	0	0	0	0	0	0	0	11	0
		금융공학과	5	13	5	0	0	0	0	0	0	0	0	0	10	0
		글로벌경영학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4	8	0	1	1	0	5	0	0	0	0	0	5	0
		영어영문학과	6	16	5	3	2	0	5	0	0	0	0	0	11	0
		불어불문학과	4	13	0	1	1	0	0	0	0	0	0	0	3	0
		사학과	3	14	0	1	1	0	0	0	0	0	0	0	3	0
	사회과학 대학	문화콘텐츠학과	3	12	0	1	1	0	0	0	0	0	0	0	5	0
		행정학과	7	8	4	2	2	0	0	0	0	0	0	0	10	0
		심리학과	5	12	4	2	1	0	0	0	0	0	0	0	10	0
		스포츠레저학과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다산학부 대학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15	30	15	7	5	0	12	0	0	0	0	0	20	0
	다산학부 대학	자유전공학부(인문)	5	0	0	0	0	0	5	0	0	48	0	0	0	0
	자 연	의과대학	의학과	0	20	0	0	0	7♣	10	0	10	0	♣	0	0
간호대학		간호학과	6	20	7	2	2	0	7	0	0	0	0	18	8	
약학대학		약학과	0	15	0	0	0	0	5	0	0	10	0	0	0	
합계			279	563	201	95	57	7	224	10	10	146	♣	467	8	

♣ 학생부종합(지역의사선발전형) 진료권별 선발인원: 남양주권 2명 / 의정부권, 이천권, 포천권, 인천서북권, 인천중부권 각 1명

♣ 정시 수능(지역의사선발전형)은 수시 학생부종합(지역의사선발전형) 각 진료권별 미충원 이월인원에 한하여 모집함

[정원외]

계열	단과대학	학과(부)	수시 (재외국민)		자율화			수시		정시나군				정시다군			
			재외국민 (3년)		재외국민 (모집인원외)		특성고 등입학 재직자 전형	종합		수능				수능			
			최대 모집 가능 인원	계열 별 모집 인원	전 교 과 성 적 이 수 자	북 한 이 탈 주 민		특 수 교 과 대 상 자 전 형	국 방 IT 우 수 인 재 1 전 형	농 어 촌 학 생 전 형	특 성 고 졸 업 자 전 형	기 회 균 형 전 형	국 방 IT 우 수 인 재 2 전 형	농 어 촌 학 생 전 형	특 성 고 졸 업 자 전 형	기 회 균 형 전 형	
자연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7	22	선발	선발	0	0	0	0	0	0	0	3	2	2	
		산업공학과	4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2	2	1
		화학공학과	2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1	1	1
		첨단신소재공학과	4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1	1	1
		응용화학과	2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1	1	0
		환경안전공학과	2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1	1	1
		건설시스템공학과	2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1	1	1
		교통시스템공학과	2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1	1	1
		건축학과	4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1	2	1
	융합시스템공학과	-	-		-	55	0	0	0	0	0	0	0	0	0	0	0
	첨단ICT 융합대학	전자공학과	3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2	2	2
		지능형반도체공학과	-		-	-	0	0	0	0	0	0	0	0	0	0	0
		미래모빌리티공학과	2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0	0	0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3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2	2	1
		사이버보안학과	1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1	1	1
		디지털미디어학과	4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2	2	2
	자연과학 대학	국방디지털융합학과	-		-	-	0	0	23	0	0	0	7	0	0	0	0
		수학과	2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1	0	0
		프런티어과학학부	4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4	0	0
첨단바이오융합대학	2	선발	선발	0	0	0	0	0	0	0	0	3	1	2			
다산학부 대학	자유전공학부(자연)	2	선발	선발	0	0	0	3	1	3	0	0	0	0	0		
인문	경영대학	경영학과	3	선발	선발	0	2	0	0	0	0	0	2	2	1		
		경영인텔리전스학과	-	-	-	0	0	0	0	0	0	0	0	0	0		
		금융공학과	-	-	-	0	0	0	0	0	0	0	0	0	0		
		글로벌경영학과	-	-	-	55	0	0	0	0	0	0	0	0	0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	선발	선발	0	1	0	0	0	0	0	2	0	0		
		영어영문학과	3	선발	선발	0	1	0	0	0	0	0	2	0	0		
		불어불문학과	2	선발	선발	0	1	0	0	0	0	0	2	0	0		
		사학과	2	선발	선발	0	1	0	0	0	0	0	2	0	0		
		문화콘텐츠학과	2	선발	선발	0	0	0	0	0	0	0	2	0	1		
	사회과학 대학	행정학과	2	선발	선발	0	1	0	0	0	0	0	2	0	0		
		심리학과	2	선발	선발	0	1	0	0	0	0	0	2	0	0		
		스포츠레저학과	-	-	-	0	0	0	0	0	0	0	0	0	0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	5	선발	선발	0	2	0	0	0	0	0	5	0	2		
다산학부 대학	자유전공학부(인문)	1	선발	선발	0	0	0	2	0	2	0	0	0	0			
자연	의과대학	의학과	2	2	선발	선발	0	0	0	1	0	0	0	0	0		
	간호대학	간호학과	2	2	-	선발	0	0	0	0	0	0	3	0	0		
	약학대학	약학과	2	2	선발	선발	0	0	0	2	0	2	0	0	0		
합계			40	선발	선발	110	10	23	8	1	7	7	51	22	21		

- 1)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재외국민): 모집단위별 최대 모집인원 및 계열별 선발인원으로, 모집단위 소계에는 미포함
- 2)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전교육과정 이수자)는 모집인원 제한 없이 선발 모집단위에서 적정인원 선발
- 3)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북한이탈주민)은 모집인원 제한 없이 선발 모집단위에서 적정인원 선발

# 학생부 교과 및 출결 반영방법

1. 대상 전형: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실기/실적(체육우수자(축구)전형)

## 2.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교과(편제) 반영
- 학년별 가중치 없음, 교과별 가중치 없음

※ 교과(편제)명에 따라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 과목의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음

3. 인정범위 및 반영비율: 전형별 학생부 반영비율의 100%(기본점수 없음)

대 상	인정범위	반영 교과
졸업예정자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조기졸업자*	1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	

\* 조기졸업자는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지원 불가

## 4. 반영방법

<교과점수 반영방법>

가. 활용지표: 등급, 성취도, 이수학점

나. 교과점수 산출 방법

1) 등급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성취도	A	B	C	D	E
점수	100	96	90	80	0

2) 교과점수 산출

$$\text{교과점수} = \frac{\sum(\text{과목별 과목점수})}{\sum(\text{과목별 이수학점})}$$

▫ 과목점수 계산방법

- 사회/과학 융합선택 제외과목: 과목별  $\{(이수학점 \times \text{등급점수} \times 0.8) + (이수학점 \times \text{성취도점수} \times 0.2)\}$
-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과목별  $(이수학점 \times \text{성취도점수})$

※ 사회/과학 융합선택은 상위 5개 과목에 한하여 반영

다. 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단,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위 5개 과목 까지 반영함

- 1)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상위 5개 과목까지 반영하며, 해당 과목이 5개 이하인 경우 모두 반영
- 2) 성취도 상위 과목을 우선 반영하며, 성취도가 동일한 경우 이수학점이 큰 과목을 반영

<비교과(출결) 반영방법>

가. 활용지표: 미인정(무단)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나. 비교과점수 산출 방법

미인정(무단)결석일수	0~3일	4~9일	10~14일	15~19일	20일 이상
고교추천전형	10점	8점	6점	4점	0점
체육우수자(축구)전형	1점	0.8점	0.6점	0.4점	0점

- \* 미인정(무단)지각, 조퇴, 결과 3회는 결석 1일로 환산하여 합산하며, 소수점 이하 버림  
예시) 미인정 지각 2회, 미인정 조퇴 1회, 미인정 결과 2회인 경우 결석 1일로 환산하여 합산
- \* 학교생활기록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출결상황을 합산하여 반영함
- \* 고교추천전형, 체육우수자(축구)전형만 해당

5. 비교내신: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기졸업자, 학생부가 없거나 교과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자 등은 논술점수/실적점수 등을 활용하여 교과점수 및 출결점수 산출

\*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는 비교내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유한 기졸업자의 경우, 동점자 처리 기준 상 이수학점(단위) 산정 시에는 해당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산정함

## 논술 반영 방법

### 1. 논술 유형, 출제경향

계열	출제경향
자연계열 (약학과 포함) [수리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li> <li>-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수학적 주제를 다룸</li> <li>- 풀이과정에 부분점수를 부여함</li> <li>- 공식을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음</li> <li>-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li> </ul>
의학과 [수리논술 + 과학논술(생명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논술: 수리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li> <li>- 과학논술: 자연과학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li> <li>- 풀이과정에 부분점수를 부여함</li> <li>- 공식을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음</li> <li>-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li> </ul>
인문계열 [통합논술(언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해력을 바탕으로 논리력, 표현력,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출제</li> <li>-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출제</li> <li>- 인문/사회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제시문을 다룸</li> <li>-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li> </ul>

### 2. 시험시간: 90분

##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전형		내용	
수시	학생부교과 (고교추천전형)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탐구 2개 과목만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출 수 없음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탐구 2개 과목만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출 수 없음
	학생부종합 (ACE전형 면접형)	의학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사탐 평균) 4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약학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사탐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학생부종합 (ACE전형 서류형)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탐구 2개 과목만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출 수 없음
		자연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탐구 2개 과목만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출 수 없음
	학생부종합 (지역의사선발전형)	의학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사탐 평균) 4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의학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사탐 평균) 4개 영역 등급 합 6이내
		약학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사탐 평균) 중 3개 영역 등급 합 5이내
	정시	수능(국방IT우수인재2전형)	수학, 탐구(과탐, 사탐 2개 과목 평균) 등급 합 6이내

\* 수능최저학력기준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등급)으로 반영하며, 탐구영역은 직탐을 포함할 수 없음

## 체 육 우수자(축구)전형 실기평가 방법

1. 대상 전형: 실기/실적(체육우수자(축구)전형)
2. 실기평가 방법: 하프코트 미니게임, 풀코트 게임을 통해 체력 및 지구력, 기술 평가

## 학 교 폭 력 조 치 사 항 반 영 방 법

1. 대상자: 전체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 지원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조치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
  - 가. 검정고시 또는 해외고 출신자 등의 경우에도 국내 고등학교를 일부 재학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존재하는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 확인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나.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각 모집시기별 서류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적용함 (제출서류 접수 후 추가·삭제·수정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2. 전형별 반영 방법

- 가. 학생부종합전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류평가 시 정성평가로 반영함
- 나. 학생부종합전형 외의 전형
  - 학교폭력조치사항 1호 ~ 8호는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전형총점 기준 최고 7% ~ 최저 1% 감점 적용하며, 9호는 불합격처리함
  - 복수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가장 큰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반영함

학교폭력 조치사항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감점기준	-1%		-3%		-5%		-7%		불합격

# 수능 반영 방법

## 1.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가. 일반전형, 지역의사선발전형, 국방IT우수인재2전형, 농어촌학생전형, 기회균형전형

구분	모집단위 또는 단과대학	수능 반영영역 및 비율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자연	공과대학, 첨단ICT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자연과학대학, 의학과, 간호학과(일반전형4 제외), 약학과, 첨단바이오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자연)	20%	40%	10%	5%	25%	총점에서 등급별로 감점
인문1	경영대학, 간호학과(일반전형4)(교차)	25%	35%	15%	20%	5%	
인문2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인문)	35%	20%	15%	25%	5%	

나. 특성화고졸업자전형

구분	모집단위	수능 반영영역 및 비율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특성화	공과대학, 첨단ICT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첨단바이오융합대학, 경영대학, 자유전공학부(자연)	25%	40%	15%	20%	총점에서 등급별로 감점

※ 전형별/모집단위별 지정된 수능 영역 일부 또는 전부 미응시자는 불합격처리함(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 특성화고졸업자전형은 탐구영역에 직탐 또는 사탐·과탐 반영 가능

## 2. 수능 성적 활용지표

가. 수능성적 반영방법

국어, 수학, 탐구	영어	한국사
표준점수	자체변환점수	감점방식

나. 수능총점 계산식: 2028학년도 수능성적 기준 각 영역별 점수의 합산(한국사는 수능총점에서 감점)

$$1) \text{ 국어, 수학, 탐구: } \frac{\text{표준점수}}{\text{2028학년도 해당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 \times \text{반영비율} \times 1,000$$

※ 특성화고졸업자전형 탐구점수 계산식

- 직업탐구 응시자

$$\frac{\text{직업탐구 표준점수}}{\text{2028학년도 직업탐구 표준점수 최고점}} \times \text{반영비율} \times 1,000$$

- 사회/과학탐구 응시자

$$\frac{\text{사회탐구 표준점수와 과학탐구 표준점수의 평균}}{\text{2028학년도 사회탐구 표준점수 최고점과 과학탐구 표준점수 최고점의 평균}} \times \text{반영비율} \times 1,000$$

2) 영어: 아래 표의 환산방식에 따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변환점수(10%)	100	98	96	84	60	40	20	10	0
변환점수(15%)	150	147	144	126	90	60	30	15	0

3) 한국사: 수능 등급별 일정 점수를 수능총점에 반영(감점 방식)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 점수	감점없음				-5	-10	-20	-30	-40





전형	지원 자격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고등학교 내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와 일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일반 교육과정 졸업자는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li> <li>※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됨</li> <li>※ 특성화고교 출신자는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1전형)의 모집단위 중 공과대학, 첨단ICT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경영학과만 지원할 수 있음</li> </ul>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①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p>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와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p> <p>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p> <p>※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관련 법령개정시 지원 자격 인정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p>			
<b>학생부종합 (고른기회2전형)</b>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 항목에서 규정한 세부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사회 기여자	<p>①~⑥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p>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를 교부받은 자)의 자녀</p> <p>②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의무복무기간 제외)</p> <p>③ 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p> <p>④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p> <p>⑤ 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p> <p>※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의 재직기간 산정 시 의무복무기간은 제외하여 산정함</p> <p>※ 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의 각 근무기간은 합산 가능함 (단, 복수의 자격요건이 중복되는 재직기간은 중복산정하지 않음)</p> <p>※ 재직기간은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에서 확인 가능한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p> <p>⑥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지역 구분 중 가~다 지역에 소재 하는 근무지에서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7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통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p> <p>※ 근무자의 직종은 행정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 공무원만 해당함</p>			
	사회 배려자	<p>①~③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p>① 아동복지시설출신자: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5호의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 수용된 자</p> <p>② 장애인 부모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인 자의 자녀</p> <p>③ 다문화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p>			
	다자녀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b>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 전형)</b>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p> <p>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p> <p>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p> <p>※ 지원자 본인이 장애인대상자 또는 상이등급자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p>				
<b>학생부종합 (국방II우수인재1 전형)</b>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ICT전문성 및 글로벌역량, 리더십을 갖추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p> <p>①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p> <p>* 2028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2032.06.01.(2002.06.02. ~ 2012.06.01. 출생자)</p> <p>* 군필자는 임관일 기준 나이 산정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군 복무기간별 아래의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p>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합산 나이		1세	2세	3세
	구 분	내 용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li> <li>-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 </ul>				

전형	지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li> <l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li> </ul> </li> <li>- 단행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li> </ul> <p>②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p> <p>③ 친권자 동의 및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p> <p>④ 입학 후 당해 학년도 최초 학기 수강이 가능한 자</p>														
<b>학생부종합 (지역의사선발 전형)</b>	<p>「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으로, 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2]가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p> <p>○ 중학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호가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p> <p>○ 고등학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 각목의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예정)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진료권</th> <th style="width: 70%;">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경기도 의정부권</td> <td>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td> </tr> <tr> <td>경기도 남양주권</td> <td>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td> </tr> <tr> <td>경기도 이천권</td> <td>이천시, 여주시</td> </tr> <tr> <td>경기도 포천권</td> <td>포천시</td> </tr> <tr> <td>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td> <td>서구, 강화군</td> </tr> <tr> <td>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td> <td>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td> </tr> </tbody> </table> <p>* 지원자의 중학교, 고등학교 소재지역 및 거주지역은 모두 동일한 진료권에 해당해야 함  * 재학기간(입학~졸업)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  *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해당 지역 고교 재학 및 거주)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격을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함)  * 지원자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  * 진료권별 지역의사선발전형 합격자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졸업 후 해당 진료권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함  * 2028학년도 수능성적 기준 지정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함</p>	진료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 지역	경기도 의정부권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도 남양주권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이천권	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포천권	포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	서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진료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 지역														
경기도 의정부권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도 남양주권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이천권	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포천권	포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	서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 3. 학생부종합(자율화)

전형	지원 자격				
<b>학생부종합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b>	<p>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 목(아래 ①~④)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2028년 3월 1일 기준)</p> <p>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p> <p>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p> <p>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p> <p>④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lt;산업체 재직기간, 인정범위 유의사항&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85%;">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재직 기간</td> <td>- 2028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제출서류로 확인가능한 기간)이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 재직기간 3년은 1,095일 기준으로 산정(3년×365일=1,095일)</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재직 기간	- 2028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제출서류로 확인가능한 기간)이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 재직기간 3년은 1,095일 기준으로 산정(3년×365일=1,095일)
구분	내용				
재직 기간	- 2028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제출서류로 확인가능한 기간)이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 재직기간 3년은 1,095일 기준으로 산정(3년×365일=1,095일)				

전형	지원 자격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며, 재직 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li> <li>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 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li> <li>현 직장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 범위 내에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li> </ul>
	산업체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 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함</li> <li>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산정함</li> <li>원서접수 시작일 및 입학일 기준 재직중이어야 함</li> <li>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으로 인정</li> <li>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li> <li>4대보험 가입 대상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농업, 수산업 등)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증명서((농지원부 등) 확인을 통해 인정받은 자</li> <li>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li> <li>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li> </ul>

#### 4. 논술 및 실기/실적(수시)

전형	지원 자격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실기/실적 (체육우수자 전형(축구))	<p>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단, 2025년 1월 이후 학력 인정자) 중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p> <p>① 2025년 ~ 2027년 청소년대표 ※ 단, 국내·외 대회에 선발 및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함(단순 소집 제외)</p> <p>② 2025년 ~ 2027년 전국대회 4강 이내 입상자</p> <p>③ 2025년 ~ 2027년 고등리그 왕중왕전, K리그 U18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 단, 위 ②, ③번 조건의 해당 기간 중 경기실적평가에 반영되는 대회(또는 리그) 가운데 최소한 1개의 대회(또는 리그)에서 1학년 때는 소속팀 출전경기 시간의 30% 이상, 2학년 때는 40% 이상, 3학년 때는 50% 이상 출전해야 함 ※ 포지션별 인원: FW(5명이내), MF(5명 이내), DF(5명이내), GK(2명이내) 선발 (단, 포지션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할 수 있음)</p>

#### 5. 수능위주(정시)

※ 해당 전형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 함(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전형	지원 자격														
수능(일반전형 1,2,3,4(교차))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능 (지역의사선발 전형)	<p>◎ 수능(지역의사선발전형)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지역의사선발전형) 미충원 이월 인원에 한하여 모집을 시행함</p> <p>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려는 사람으로, 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2]가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p> <p>○ 중학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제1호가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p> <p>○ 고등학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 제2호 각목의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졸업(예정)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진료권</th> <th>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경기도 의정부권</td> <td>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td> </tr> <tr> <td>경기도 남양주권</td> <td>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td> </tr> <tr> <td>경기도 이천권</td> <td>이천시, 여주시</td> </tr> <tr> <td>경기도 포천권</td> <td>포천시</td> </tr> <tr> <td>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td> <td>서구, 강화군</td> </tr> <tr> <td>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td> <td>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td> </tr> </tbody> </table>	진료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 지역	경기도 의정부권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도 남양주권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이천권	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포천권	포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	서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진료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 지역														
경기도 의정부권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경기도 남양주권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경기도 이천권	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포천권	포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서북권	서구, 강화군														
인천광역시 인천중부권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전형	지원 자격												
	<p>※ 지원자의 중학교, 고등학교 소재지역 및 거주지역은 모두 동일한 진료권에 해당해야 함</p> <p>※ 재학기간(입학~졸업)은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상 기재일을 기준으로 함</p> <p>※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해당 지역 고교 재학 및 거주)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p> <p>※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함)</p> <p>※ 지원자의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p> <p>※ 진료권별 지역의사선발전형 합격자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졸업 후 해당 진료권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함</p>												
<b>수능 (국방II우수인재2 전형)</b>	<p>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ICT전문성 및 글로벌역량, 리더십을 갖추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p> <p>①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p> <p>* 2028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2032.06.01.(2002.06.02. ~ 2012.06.01. 출생자)</p> <p>* 군필자는 임관일 기준 나이 산정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군 복무기간별 아래의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320 651 1469 730"> <thead> <tr> <th>복무기간</th> <th>1년 미만</th> <th>1년 이상 ~ 2년 미만</th> <th>2년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합산 나이</td> <td>1세</td> <td>2세</td> <td>3세</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data-bbox="280 741 1501 1350"> <thead> <tr> <th>구 분</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2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li> <li>-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 <l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li> <l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li> </ul> </li> <li>-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li> </ul> </td> </tr> </tbody> </table> <p>②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p> <p>③ 친권자 동의 및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p> <p>*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p> <p>④ 입학 후 당해 학년도 최초 학기 수강이 가능한 자</p> <p>※ 2028학년도 수능성적 기준 지정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함</p>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합산 나이	1세	2세	3세	구 분	내 용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li> <li>-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 <l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li> <l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li> </ul> </li> <li>-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li> </ul>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합산 나이	1세	2세	3세										
구 분	내 용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li> <li>-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 <l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li> <l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li> </ul> </li> <li>-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li> </ul>												
<b>수능 (농어촌학생전형)</b>	<p>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로서 아래 ①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p>※ <b>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b></p> <table border="1" data-bbox="280 1630 1501 1883"> <thead> <tr> <th>유 형</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① 6년과정 이수자(부·모·지원자)</td> <td>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하는 기간 동안 <b>본인·부·모 모두</b>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td> </tr> <tr> <td>② 12년과정 이수자(지원자)</td> <td>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b>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b>본인</b>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td> </tr> </tbody> </table> <p>※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해야 함</p> <p>※ 6년 과정 이수자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p>※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p> <p>※ 12년 과정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p>	유 형	내 용	① 6년과정 이수자(부·모·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 하는 기간 동안 <b>본인·부·모 모두</b>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② 12년과정 이수자(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b> 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b>본인</b> 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유 형	내 용												
① 6년과정 이수자(부·모·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b> 하는 기간 동안 <b>본인·부·모 모두</b>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② 12년과정 이수자(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b>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b> 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b>본인</b> 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전형	지원 자격						
	<p>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p>※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 대안학교(인가,비인가), 국외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p> <p>※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p> <p>※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함)</p> <p>※ 학생과 부모의 거주는 각각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록과 일치해야 함</p>						
수능 (특성화고졸업자 전형)	<p>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① 동일 계열의 고교 교과(군) 해당자</td> <td>모집단위별로 지정한 교과(군)에 해당하는 자</td> </tr> <tr> <td>② 전문교과 24단위(학점) 이상 이수자</td> <td>모집단위별로 지정한 교과(군)에 해당하는 전문교과 24단위(학점) 이상 이수자</td> </tr> </tbody> </table> <p>※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생 제외) 및 일반고등학교 내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졸업생만 해당</p> <p>※ 일반고등학교 내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와 일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일반 교육과정 졸업자는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p> <p>※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됨</p>	유형	내용	① 동일 계열의 고교 교과(군) 해당자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교과(군)에 해당하는 자	② 전문교과 24단위(학점) 이상 이수자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교과(군)에 해당하는 전문교과 24단위(학점) 이상 이수자
	유형	내용					
① 동일 계열의 고교 교과(군) 해당자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교과(군)에 해당하는 자						
② 전문교과 24단위(학점) 이상 이수자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교과(군)에 해당하는 전문교과 24단위(학점) 이상 이수자						
수능 (기회균형전형)	<p>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①또는 ②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p>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와 제10호(차상위계층)에 따른 대상자</p> <p>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p> <p>※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관련 법령개정시, 지원 자격 인정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p>						

##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수시)

전형	지원 자격										
모집인원내 (재외국민)	<p>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p> <p>※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격기준</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부모의 국외근무 기간</td> <td>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국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등)</td> </tr> <tr> <td>학력요건</td> <td>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 2028.02.28.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일본 4월 학제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td> </tr> <tr> <td>국외 재학기간</td> <td>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비연속 수료 인정)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td> </tr> <tr> <td>국외 체류일수</td> <td>◎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td> </tr> </tbody> </table>	자격기준	세부내용	부모의 국외근무 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국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등)	학력요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 2028.02.28.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일본 4월 학제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국외 재학기간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비연속 수료 인정)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국외 체류일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자격기준	세부내용									
	부모의 국외근무 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하여야 함(국외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등)									
	학력요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 2028.02.28.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일본 4월 학제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국외 재학기간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비연속 수료 인정)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국외 체류일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 7.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자율화)

전형	지원 자격								
<b>모집인원의 (전교육과정 이수자)</b>	<p>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자격기준</th> <th style="background-color: #ffffcc;">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b>학력요건</b></td> <td> <p>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28.02.28.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일본 4월 학제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자격요건</b></td> <td> <p>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제6조 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에서 별도로 선발함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 (홈페이지:www.ajou.ac.kr/iadmissions, ☎ 031-219-2171)]</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b>체류요건</b></td> <td> <p>국외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일수를 확인하여 실제 국외 재학여부를 판단함 ※ 전교육과정 이수자가 방학,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인정</p> </td> </tr> </tbody> </table>	자격기준	세부내용	<b>학력요건</b>	<p>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28.02.28.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일본 4월 학제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p>	<b>자격요건</b>	<p>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제6조 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에서 별도로 선발함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 (홈페이지:www.ajou.ac.kr/iadmissions, ☎ 031-219-2171)]</p>	<b>체류요건</b>	<p>국외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일수를 확인하여 실제 국외 재학여부를 판단함 ※ 전교육과정 이수자가 방학,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인정</p>
	자격기준	세부내용							
	<b>학력요건</b>	<p>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28.02.28.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일본 4월 학제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p>							
<b>자격요건</b>	<p>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제6조 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에서 별도로 선발함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 (홈페이지:www.ajou.ac.kr/iadmissions, ☎ 031-219-2171)]</p>								
<b>체류요건</b>	<p>국외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일수를 확인하여 실제 국외 재학여부를 판단함 ※ 전교육과정 이수자가 방학,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인정</p>								
<b>학력요건</b>	<p>국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28.02.28.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기 개시일이 3월 이후인 경우(일본 4월 학제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p>								
<b>자격요건</b>	<p>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제6조 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에서 별도로 선발함 [국제협력처 유학생입학팀 (홈페이지:www.ajou.ac.kr/iadmissions, ☎ 031-219-2171)]</p>								
<b>체류요건</b>	<p>국외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일수를 확인하여 실제 국외 재학여부를 판단함 ※ 전교육과정 이수자가 방학,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인정</p>								
<b>모집인원의 (북한이탈주민)</b>	<p>「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한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자 ※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검정고시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p>								

◎ 전형별 세부 지원자격 및 인정기준, 제출서류 등은 모집요강 참고